

##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# 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기금조성재원 중 “주민성금”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기금의 조성재원중 주민성금을 제외하도록 함. (안 제12조 제1항)

### 3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(국가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제한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수 없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청소년위원회 및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청소년위원회 및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,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시 출연금</li><li>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</li><li>3. <u>주민성금, 기타출연금 및 지원금</u></li><li>4. <u>기타수입금</u></li></ol>	<p>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 -----,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-----</li><li>2. ----- --</li><li>3. <u>삭 제</u></li></ol> <p><u>3.</u> -----</p>